

혼돈 속의 트럼프 관세 정책: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무효화 판결을 연방항소법원이 일단 번복

CIT의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5년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i) 지난 2월 발표한, 펜타닐 밀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부과하기 시작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ii) 지난 4. 3. 발표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즉 전세계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는 미국 헌법 및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모두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판결문 내려받기](#)).¹⁾

이 판결은 IEEPA 1702조의 문언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관세율을 설정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1701조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항소 및 판결효력의 단기적 정지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일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항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CIT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법원은 행정부에 1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관 당국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관세의 부과·징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다음 날인 5월 29일 오전 연방항소법원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건 쟁점 관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하였고, 같은 날 오후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관세를 적어도 6월 9일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단기 행정적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이 장기적인 집행 정지를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바, 연방항소법원은 6월 9일 무렵에 장기적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연방항소법원의 5월 29일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관세는 6월 9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연방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대표 Jamieson Greer는 CIT에 지난 주 제출한 서면에 관세를 철폐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십 건의 무역 협상에 “재앙적인 상황(disaster scenario)”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CIT는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연방항소법원이 장기적인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번 CIT 판결의 효력을 유지시킨다면,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다수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국가안보법(Section 232)에 근거한 관세는 이번 CIT 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정책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무역 정책 수립에 있어 입법부와와의 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무역 정책 뿐 아니라 국제 무역 환경, 나아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미국 대법원은 데임스 앤드 무어 대 레이건 사건(Dames & Moore vs Regan) 등에서, IEEPA가 미합중국 정부에 부여한 권한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경제제재 조치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IEEPA가 의회의 입법 권한을 헌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위임하여 위헌·위법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CIT의 판결의 효력이 6월 9일 이후 계속 유지될 것인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별도의 행정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촌의 통상산업전문팀 변호사들은 그동안 정부 및 기업의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해 수준 높은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독보적인 경험, 실적, 그리고 전문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율촌은 특정 거래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제재를 준수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전략의 구축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재 관련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율촌은 미국 최정상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등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관련한 포괄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

이상의 검토 내용은 미국 정부 등의 공식발표자료 및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적 의견과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

손도일 변호사

02-528-5836
dison@yulchon.com

염용표 변호사

02-528-5224
ypyeom@yulchon.com

신동찬 변호사

02-528-5356
tcshin@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02-528-5306
jhahn@yulchon.com

최용환 변호사

02-528-5709
ywchoi@yulchon.com

박진호 변호사

02-528-5632
jhpark@yulchon.com

박소영 변호사

02-528-5670
soyoung@yulchon.com

임지연 변호사

02-528-5509
jiyeonlim@yulchon.com

박준모 외국변호사

02-528-5773
parkjm@yulchon.com

김준형 공인회계사

02-528-5462
junhyungkim@yulchon.com

윤경애 변리사

02-528-5320
kayoon@yulchon.com